

의안번호	2214912
의 퇴 인	박성훈의원
회 답 일	2026.1.21.
추계번호	25D6710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5	안 제54조의2(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)제2항	과태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고액·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함)를 둬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3	안 제54조의2(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)제2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고액·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54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참고로, 2025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25만원¹⁾임
- 다만, 심의위원회는 과태료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·재심의하는데, 이에 따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또한,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」).

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연도별 법무부 과태료 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연도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: 2021~2024년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1	2022	2023	2024
과태료 징수결정액	22,320	21,493	21,904	21,637
수납액	12,074	11,647	11,915	11,123
수납률	54.1%	54.2%	54.6%	51.4%

자료: 법무부 2025년 사업설명자료 II-1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